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정 철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cchung@kiep.go.kr, Tel: 3460-1184)
김정곤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김준동 협력정책실장 (jdkim@kiep.go.kr, Tel: 3460-1028)
이경아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kalee@kiep.go.kr, Tel: 3460-1083)
이주미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mlee@kiep.go.kr, Tel: 3460-1052)
김종혁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3460-1193)
이철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김은지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김부용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송영철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권기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김태윤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장 (tykim@kiep.go.kr, Tel: 3460-1158)
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ymkim@kiep.go.kr, Tel: 3460-1075)
신민금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mgshin@kiep.go.kr, Tel: 3460-1169)
이재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3460-1134)

차 례 ●●●

1. 세계 보호무역조치 동향
2. 주요국별 잠재적 보호무역조치 사례
3.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4.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소송
5. 대응방안

주요 내용 ●●●

- ▶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무역제한조치의 성격이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해 해당 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장기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고착화가 우려됨.
 - 지난 7개월간 182건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세계총수입의 0.9%에 해당하는 교역에 영향을 미침.
-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제한조치는 물론, 기술표준이나 통관 등 잠재적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제한조치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제조업 증강법, EU와 일본의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희토류 수출제한, 기술표준 강화), 인도(복잡한 행정절차 도입), 브라질(수입차에 대한 공업제품세 인상), 러시아(자동차 사용세 추가) 등 BRICs 국가들과 기타 개도국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보호무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경우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국가들의 기술규제가 증가하면서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비용 증가로 국내 수출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 상당한 수출 파급효과 가능성이 우려됨.
 - 한국제품이 주요 견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 등 기업간 특허소송도 증가 추세임.
- ▶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책 마련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한류 등 문화요소를 결합한 수출 마케팅 혁신과 함께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를 원천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현지 생산설비 건설 등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한 사례와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수출을 통한 판매 극대화를 넘어 전략적 생산거점을 활용한 현지화를 통해 수출과 현지생산을 병행하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용한 제품의 친밀도 제고 등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세계 보호무역조치 동향

■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황 지속에 따라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지난 7개월간 182건(무역구제 78, 국경조치 72, 수출규제 19, 기타 13)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취해짐.

※ 이들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세계 총수입의 0.9%에 해당하는 교역에 영향을 미침(2009년 11월 이후 누적조치는 세계 총수입의 2.9%에 해당).

표 1. 무역제한조치 현황

유형	2010년 10월 중순~ 2011년 4월 중순	2011년 5월 중순~ 2011년 10월 중순	2011년 10월 중순~ 2012년 5월 중순
무역구제	66	63	78
국경조치	78	48	72
수출규제	30	34	19
기타	10	10	13
합계	184	155	182

자료: WTO(2012), *Report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신규 무역제한조치의 성격이 예전의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자국 산업보호를 통해 이들 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장기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함(2012. 6. 29, WTO 사무총장 보고서).

■ (무역상 기술장벽(TBT) 현황)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매년 1,000여 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국가들의 기술규제가 증가하면서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비용 증가로 국내 수출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함.

- 2008년 이후 개도국 통보건수가 전체의 2/3에 달함.

표 2. 기술규제 통보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통보문 건수	1,031	1,251	1,490	1,419	1,217	855

자료: WTO,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기획재정부(2012), 「보호무역주의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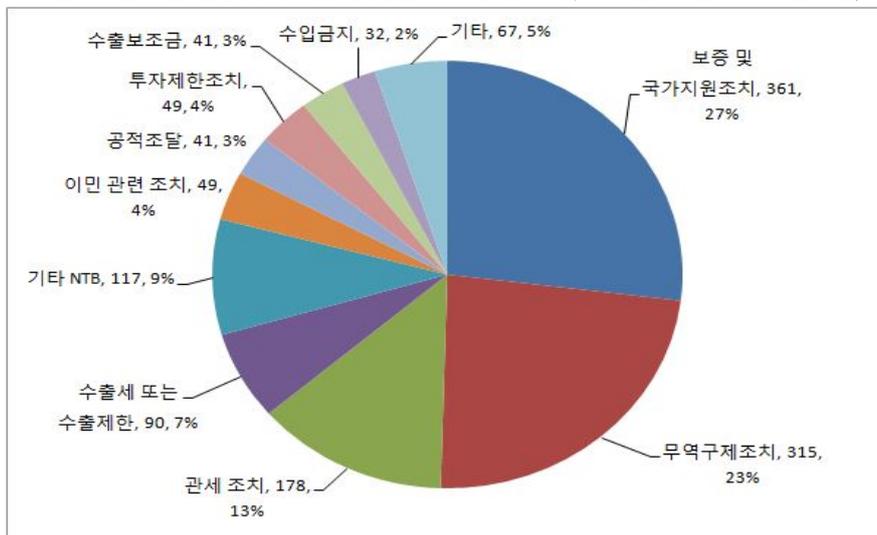
2. 주요국별 잠재적 보호무역주의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산업정책 측면의 보호주의조치 등 잠재적 무역제한조치가 확산되고 있음.

※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란 자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수입승인과 검사증명 등 무역활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지칭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이후 도입된 보호주의적 조치 가운데 산업에 대한 보증 및 국가지원 조치가 27%(36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Global Trade Alert 2012. 6, 그림 1 참고).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보호주의 조치(2008년 11월~2012년 5월)



주: 본 자료는 집계 범위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표 1]의 WTO(2012) 수치와 다름.
자료: Global Trade Alert(2012. 6).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을 승인 (2010. 8. 11)

-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제조업 증강법은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 감축·폐지, 또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가 핵심 내용임.

■ (중국)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은 최근 희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환경보호 등의 명분을 들어 생산, 유통,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수출 쿼터 축소 등)를 시행하고 있음.

- 석유, 출판물, 오락영상물의 경우 수입허가증을 갖고 있는 국영 무역회사나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유기업으로 수입자를 한정함.

- 기술표준이나 포장, 라벨링, 안전규정 등에서 중국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함.

- 수입식품에 중문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일반적 사항 외에 수입업자의 정식명칭, 주소, 연락처 등까지 표기하도록 하여 수출입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킴.
- 외국기업의 경우 인증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공장실사 결과 적용을 허용하지 않음.

■ (EU) EU는 CE(conformite europeenne) 마크 부착 의무화, 환경 관련 외국항공사 규제 등을 시행(2012. 1. 1)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제품에 대해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CE 마크 없는 제품의 역내유통은 금지함.
- 또한 외국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권 매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중국 등의 반발을 초래함.

■ (일본)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일본 내 식품, 화학·의료 제품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 규제 및 관리체계가 확대·강화됨.
- 2009년 ‘화학물질 심사제조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규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시 사전신고 의무화

■ (인도) 인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를 처리할 때 복잡한 행정절차나 까다로운 기재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포기하여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또한 새로운 품목에 대해 사전 공지 없이 강제적인 인증을 도입하고, 이러한 인증에 대해 충분한 대처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의 수입제한조치로 작용함.

■ (브라질)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한해 공업제품세(IPI, 부가가치세의 일종)를 30%포인트 인상하고 적용기간을 2012년 말에서 2017년까지 연장함.

- 2012년 3월부터 섬유, 신발, 장난감 등 저가 수입산 제품의 대량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화물통관 검사 강화 조치(Operacao Mare Vermelha)를 실시하여 수입 억제 효과를 도모함.

■ (러시아) 2012년 8월 30일자 러시아 연방법 N 128-FZ와 정부령 N 870에 따라 9월 1일부터 자동차 사용세(utilization fee)가 추가적으로 부과됨.

※ 사용세는 일종의 환경분담금으로 폐차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세금임.

- 향후 폐기 시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을 약속하는 국내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관세 적용 시 세금이 자동적으로 같이 부과됨.

- 이 외에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항공, 조선 등의 분야에서 정부조달 시 자국 상품 우대조치 관련 법안 및 보조금 지원 법안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함.
- (말레이시아) 2010년 1월 1일에 개정된 ‘국가자동차정책’ 을 통해 중고 자동차부품 수입 금지, 중고차 수입 금지, 승용차 수입 승인(import license) 수수료 부과 등을 실시함.
- (태국) 태국의 무역제한조치는 기술표준 및 품질표시 인증 관련 제도가 주를 이루며, 태국산업표준원의 강제 품질규격 인증제도가 대표적임.
 - 이 인증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강, 전기제품, 자동차 등 태국이 중점 육성하는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검역 강화, 광물자원 수출제한 등 수출입 규제를 도입함.
 - 2012년 6월 농업부장관령 제15호를 통해 과실 · 채소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항구를 축소함.
 - 또한 2012년 5월 무역부장관령 제23호를 통해 65개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을 강화함.
- (터키) 2011년 10월 터키는 술 · 담배 · 휴대폰 ·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전격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세수증가를 도모함.

3.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 (동향)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11년 16건에서 2012년 9월 5일 현재까지 20건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조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유형별 수입규제(누적 건수 기준)는 반덤핑 96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 세이프가드 20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임(80%).

표 3. 연도별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10	17	16	18	16

자료: 외교통상부.

- 국가별 수입규제(누적 건수 기준)는 인도(23건),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0건) 등 4개국 규제가 과반을 차지함(62건, 51.7%).
- 품목별(누적 건수 기준)로는 화학(45건), 철강(37건), 섬유(16건) 관련 규제가 98건으로 81.7%를 차지함.
※ 화학은 중국·인도(31건), 철강은 미국(8건), 섬유는 터키(5건)가 주도함.

■ (수출 파급효과) 2012년 1~9월 20건의 신규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해당 품목 전 세계 수출의 약 6.3%(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0.3%)를 차지함.

- 세탁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상당한 수출 파급효과 가능성이 있음.
※ 세탁기(미국, 39.2%), 폴리실리콘(중국, 47%), 강선재(말레이시아, 15.1%), 나일론사(브라질, 9.7%) 등
- 2012년 6월 이전에 조사 개시된 품목들의 경우 대부분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
※ 세탁기(-4.5%), 코팅지(-14.7%), PVC수지(-47.3%), 유입식변압기(-31.7%), 폴리에틸렌(-25.6%), 후판(-43.2%), 용접탄소강관(-34.6%) 등

4.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소송

■ (특히) 한국제품이 각국의 주요 견제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2011년 말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증가함.

- 삼성 대(對) 애플의 소송은 현재 9개국에서 50여 건이 진행 중임(표 4 참고)
-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영업비밀)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판결을 내림(8. 30).
※ 다만 코오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9. 21), 최종 판결까지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가 가능해짐.

표 4. 삼성 대 애플의 소송 현황

국가	현황	비고
미국	애플 유리	애플의 압승
일본	삼성 유리	삼성 의견 인정
한국	삼성 유리	일부 애플 의견 인정
네덜란드	혼조세	작년 8월 애플의 삼성 제품 가처분 금지 신청 판결 후,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4건의 통신 표준특허 침해 가운데 1건에 대해 삼성 승소
영국	삼성 유리	애플이 제기한 다른 소송 여전히 진행 중
호주	삼성 유리	항소심 승리해 판매금지 요청 기각됨, 본안 소송 진행 중
독일	혼조세	지역별(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로 본안 소송 진행 중이나 우선 애플의 삼성제품의 판매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상태
프랑스/이탈리아	혼조세	삼성의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상태

자료: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 미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는 1999년 9건에서 2011년 69건으로 급증함(표 5 참고).

표 5 미국의 지재권 침해(section 337) 조사 추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
건수	9	17	24	17	18	26	29	33	35	41	31	56	69	32

자료: USITC.

5. 대응방안

가. 보호무역조치 대응

- (전통적 수입규제조치)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조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및 포럼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 강화, 양자간 협력채널 활용 등을 통해 수입규제 조기 종결을 추진 중임.

※ 한·중 FTA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FTA에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수단 마련 검토

- 모니터링, 수출통계 및 마진 분석 등 사전 예방책 마련, 사후적으로는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한 조기 철회 유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등 활용

- (잠재적 보호무역조치) 점증하는 잠재적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능동적 · 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 (TBT)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업계와의 정보 교류 등 사전 대응 강화, 기술표준의 조화(harmonization)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 기술규제는 특히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FTA/RTA 체결국간의 기술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은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비회원국에 끼치는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됨(WTO, World Trade Report 2012).

- 정부간 MRA 체결에 다소 부담이 있을 경우, 특정 제품군을 중심으로 현지 인증기관과 한국 인증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비관세장벽 감축 가능

- (특허) 특허는 소송 및 결과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인 점을 감안해 지재권 등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조사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주요 무역국의 영업비밀 분쟁 및 소송에 대한 현황·애로사항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업계에 소송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환경규제조치) 환경규제는 도입동기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상대국의 정책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및 규제도 국제기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 국가 인증 취득 지원 및 공통기준 개발 등 협력 추진 필요(2012년 6월 현재 9개 환경라벨링제도 운영국(지역 포함)¹⁾들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MRA의 내용은 글상자 1 참고).

- 교역량이 많은 품목(휴대폰, 타이어 등) 중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군 및 향후 개발 가능 품목군을 중심으로 상호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해외 수출지원을 강화함.

클상자 1. 환경 MRA의 주요 내용

- 양 기관은 양 국가 환경라벨링제도 간의 포괄적인 협력에 동의
- 양 기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라벨링제도 및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인정
- 양 기관은 상대 국가 환경라벨링 인증 취득을 원하는 자국 신청인에 대한 인증 지원에 동의
- 양 기관은 양 국가 환경라벨링제도에 대한 정보 교류(최근 정보, 인증절차, 기준 제개정, 인증 수수료 등)에 동의
- 양 기관은 양 제도 간의 공통기준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통기준 개발 진행에 대하여 동의

자료: 환경부.

- (수출제한조치) 희토류 같은 희귀자원 및 광물자원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술을 확보하며 자원을 재활용하고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 또한 현지 광물자원 가공업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함.

나. 보호무역주의 관련 수출파급효과 대응

■ (수출시장 다변화) 동남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일부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어 수입규제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함.

-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권역별 생산 및 수출 거점 마련
 - ※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조기 타결 검토
- 무역금융 지원 확대, 단일화된 해외시장 정보창구 운영 등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 지원

■ (수출마케팅 혁신) 기존의 수출마케팅에 한류 등 문화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전략 도입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현지 여건에 맞는 라벨링, 광고, 한국과의 문화교류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브랜드 친밀도 제고

■ (현지화 전략) 수출품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를 원천적으로 극복

- 전략적 생산거점을 활용한 적극적 현지화 추진
 - 현지 생산과 수출을 병행하는 구조로 이들 제품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지 경제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등 이미지 제고
 - ※ 일본은 1980년대 자발적 수출감축(VER) 등 자율 규제에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현지 생산설비 건설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규제 및 대미 통상마찰을 해소한 바 있음.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용한 현지화 및 마케팅 강화

1) 대만(2002), 태국(2002), 일본(2003), 호주(2004), 중국(2005), 뉴질랜드(2006), 북유럽 5개국(2010), 캐나다(2012), 미국(2012).

부록.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부록 표 1. 한국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현황: 2012년 1~9월(20건)

	규제국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 개시일
1	미국	8450.20, 8450.11, 8450.90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AD/CVD (조사중)	2012-01-20
2	대만	4810.13/14/19	코팅지(Coated Paper)	AD(조사중)	2012-02-07
3	대만	7208.51, 7208.52, 7208.90, 7211.14	후판((Hot rolled steel plate)	AD(종료)	2012-03-26
4	대만	7209, 7211.23, 7211.29	냉연강판(Carbon steel rolled steel flat product)	AD(종료)	2012-03-26
5	브라질	7219.32/33/34/35, 7220.20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cold-rolled stainless steel)	AD(조사중)	2012-04-17
6	브라질	7225.19, 7226.19	압연실리콘철강(flat-rolled silicon steel)	AD(조사중)	12-04-17
7	호주	3904.10.0000	PVC수지(PVC Resin)	AD(조사중)	2012-04-19
8	캐나다	8504.23/90	유입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AD(조사중)	2012-04-23
19	아르헨티나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AD(조사중)	2012-04-23
10	브라질	7208.51.00, 7208.52.00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AD(조사중)	2012-04-26
11	캐나다	7306.3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AD(조사중)	2012-05-14
12	인도	291732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Dioctyl Phthalate)	SG(조사중)	2012-05-23
13	호주	7208.51, 7208.52.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AD(조사중)	2012-06-14
14	말레이시아	7213.10, 7213.20, 7213.91, 7213.99	강선재(Steel Wire Rods)	AD(조사중)	2012-06-25
15	인도네시아	7210.12	석도강판(Tin plate)	AD(조사중)	2012-06-25
16	인도네시아	3907.60.10, 3907.60.20, 3907.60.9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AD(조사중)	2012-06-29
17	브라질	5402.31, 5402.45	나일론(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AD(조사중)	2012-07-09
18	중국	2804.61	폴리실리콘(Polysilicon)	AD(조사중)	2012-07-20
19	브라질	4011.1	타이어(Tire)	AD(조사중)	2012-07-26
20	호주	721049(zinc coated), 721230, 721061 (aluminum)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and aluminum zinc coated steel)	AD(조사중)	2012-09-05

자료: 외교통상부.

부록 표 2. 한국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현황: 2011년(16건)

	규제국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 개시일
1	터키	5408, 5407	섬유직물(woven fabrics)	SG(규제중)	2011-01-13
2	파키스탄	2915.11	포름산(Formic Acid 85%)	AD(규제중)	2011-02-23
3	터키	3907.6	PET(polyethylene erephthalate)	SG(규제중)	2011-03-11
4	브라질	7210.30, 7210.49, 7210.61, 7210.70	도금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AD(종료)	2011-04-18
5	인도	2917.35	무스프탈산(Phthalic Anhydride)	AD(조사중)	2011-04-29
6	터키	5205	면사(cotton yarn)	SG(규제중)	2011-06-11
7	인도네시아	7209.16/17/18/19, 7209.26/27/28, 7209.90, 7211.23, 7211.29, 7211.23.90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AD(조사중)	2011-06-24
8	우크라이나	8703.22, 8703.23	승용차(passenger cars)	SG(조사중)	2011-07-02
9	태국	4810.13.90, 4810.19.00, 4810.22.90, 4810.29.90, 4810.99.90	코팅지	AD(종료)	2011-07-08
10	태국	7210.61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AD(조사중)	2011-07-08
11	태국	7210.7	도색 아연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AD(조사중)	2011-07-08
12	미국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AD(조사중)	2011-07-14
13	인도	291735	무스프탈산(Phthalic Anhydride)	SG(규제중)	2011-08-10
14	러시아	730411, 730441, 730449, 730611, 730640	스테인레스관(corrosion-resistant pipes)*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SG(조사중)	2011-08-31
15	호주	7306.30, 7306.61, 7306.69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Hollow Structural Sections	AD(규제중)	2011-09-19
16	브라질	3907.40.90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Polycarbonate resin)	AD(조사중)	2011-12-21

자료: 외교통상부.